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약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강화 노력〉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45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취약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강화 노력	2
2. 부칙(시행일)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년 1월 27일
3. 회부일자 : 2026년 1월 28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체류·방문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사건·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의 영사조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은 신체적·정신적 특성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영사조력 제공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Ⅲ. 검토의견

1. 취약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강화 노력

개정안은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0조의2(취약 재외국민에 대한 고려)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은 영사조력을 제공함에 있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외교부

현재에도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취약성을 고려한 영사조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취약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수용함.

아울러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취약 재외국민’ 범위에 현행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인 미성년자·환자가 포함될 경우 적용대상의 중첩가능성에 대해 개정안이 취약 재외국민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하는 선언적·일반적 규정인 반면, 현행법 제14조는 미성년자 또는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한 특례 규정으로서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미성년자 및 환자를 개정안의 범위에 포함하더라도 규범상 충돌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함.

또한 “고령자, 장애인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할 대상을 엄격히 한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보건복지부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사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음.

나. 검토의견

1) 취약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현황

현재 고령자·장애인에 대하여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및 그 하위법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건강상태 확인,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가족 연락 및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고령자 및 장애인 재외국민 대상 영사조력 제공 최근 사례 >

(1) 고령자 귀국 지원

○(사건 경위) '24. 1. 9. 우리 국민('43년생)은 주홍콩총영사관을 홀로 방문하여 중국 하이난성 쑤야시로 가는 방법 문의

○(영사조력) 동인에게 중국 방문을 위해서는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점을 안내함. 이에 동인은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귀국 항공편 및 숙소 예약이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귀국 항공편 예약 및 숙소 예약을 지원 → 1.12 무위 귀국

(2) 여행 중 실종 장애인 영사조력

○(사건 경위) '25.11.1. 우리 국민('03년생, 뇌경변으로 인한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 중 식당에서 식사하다 갑자기 밖으로 나가 연락두절

○(영사조력) 현지 관할 경찰서에 신속한 수색 협조를 요청한 후 대상자 가족과 동행하며 대상자가 갈만한 장소를 중심으로 소재 확인 활동 실시 → 같은 날 밤 관할 경찰서로부터 대상자 신병을 확보하였다는 연락을 접수하고 대상자를 가족에게 인계

※자료: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위난대응과 제출자료(2026.02.11.)

또한 고령자·장애인 외에도 미성년자, 행려병자·정신질환자, 무자력

자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영사조력법 제14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외교부 훈령) 및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외교부 예규) 등에 근거하여 별도의 보호 조치 또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취약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현황 >

대상	조력주체	영사조력	관련 규정
고령자 장애인	재외공관장	○건강상태 확인,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가족 연락 및 지원 등	영사조력법 등
미성년자	재외공관장	○미성년자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 발생시 그 사실을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에게 고지 ○국내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의 귀국을 위한 동행조치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 ○국내 거주 및 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	영사조력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
행려병자 정신질환자	재외공관장	○해당 재외국민의 인적사항 및 보호장소 등을 파악하여 국내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 ○주재국 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연고자와 협의하여 입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연고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재외국민의 신병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재국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임시보호를 요청한 후 본부와 협의하여 국내 귀국지원 여부를 결정	재외공관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9조
무자력자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장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에서 드는 비용(▲ 긴급 의료비용, ▲ 국내 송환비용, ▲ 송환 전 숙식비)등을 지원	영사조력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자료: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위난대응과(2026.02.11.) 제출자료 재구성

개정안은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취약 재외국민 보호체계가 일정 부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률 차원에서 명문화함으로써 영

사조력 제공 과정에서의 고려 요소를 분명히 하려는 점에서 일정한 입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2) 검토의견

먼저,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영사조력법 제3조¹⁾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3조는 국가가 영사조력을 통하여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의 보호책무를 재확인하는 한편,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제3조의 일반적 선언 규정을 보완하는 성격의 규정으로 볼 수 있음.

한편, 현행법 제14조²⁾는 미성년자 또는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약 재외국민’ 범위에 제14조의 적용대상인 미성년자·환자가 포함될 경우 적용대상의 중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4조(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과 제2항에 따른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해석상 현행법 제14조는 특별규정으로서 우선 적용되고, 개정안은 일반적 고려원칙을 보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체계적 조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 등”과 같이 예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고령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음.

다양한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취약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의 규정을 두지 않는 방식도 입법목적 달성에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별 법률에서 ‘노인’ 또는 ‘고령자’를 5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 개정안에서 사용된 “고령자” 대신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입법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개정안은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함에 있어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법률 차원에서 보완·구체화함으로써 취약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보임.

2. 부칙(시행일)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일정 부분 운영되고 있는 취약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명문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률 개정에 따라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나 추가적인 하위법령 정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63